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0. 9. 1.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0년 8월 21일
- 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2020년 8월 24일
- 라. 상정일자 :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0. 8. 3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지원국장 이형삼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, 연가 사용 활성화, 특별휴가제 개선 및 연가제도 운영기준 정비를 통해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·형평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일·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특별휴가 개선(안 제24조)
 - 임신검진휴가 확대(안 제24조제3항)
 - 유산휴가·사산휴가 일수 및 대상 확대(안 제24조제5항 및 제6항)
 - 자녀돌봄휴가 부여와 가산일수 적용(안 제24조제18항)
 - 직원 자기계발 휴가 부여(안 제24조제19항)
-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한 연가제도 개선(안 제18조 및 제20조)
 - 연가 가산 제도 개선(안 제18조제2항)
 - 연가사용 활성화 등을 위한 연가제도 개선(안 제20조제7항, 제20조의4)
- 연가제도 운영기준 정비(안 제20조 및 제25조)
 - 연가사용 권장을 위한 조치 기간 확대(안 제20조의3)
 - 연가 일수에 토요일·공휴일 산입 제외(안 제2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의 특별휴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된 바, 연가제도 및 특별휴가 제도의 일부 조항을 신설,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-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18조에서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가산과 관련하여 내용을 정비하였으며
 - 안 제20조에서는 10일 이상의 연가 사용 신청 시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고 업무대행자 지정, 인력보충 등 원활한 업무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 조치를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20조의3에서는 공무원의 연가 사용 촉진을 위하여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 공지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20조의4에서는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중 남은 연가 일수를 이월·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월·저축한 연가는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연가의 저축제도를 도입하였으며,
- 안 제24조에서는 여성공무원이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임신 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10일까지 유산·사산 휴가를 주고 배우자가 유산·사산한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3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며,
- 또한,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연간 2일(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)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하고,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자기계발 휴가 1일을 부여하는 등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를 개선하였음.
- 안 제25조에서는 휴가기간 중 연가일수에 토요일·공휴일 산입 기준을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15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확대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9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, 저출산 시대의 출산육아 등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연가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,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계 법령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49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0. 8. .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상위 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이 개정사항을 우리구 복무 조례에 반영하여 연가 사용 활성화, 특별휴가제 개선 및 연가제도 운영기준 정비를 통해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·형평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일·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특별휴가 개선

1) 임신검진휴가 확대

- 여성보건휴가를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와 임신기간 내 총 10일의 임신검진휴가로 확대함.(안 제24조제3항)

2) 유산휴가·사산휴가 일수 및 대상 확대

- 임신 초기 유산·사산 공무원에 대한 휴가 부여일수를 확대함.(안 제24조제5항)
-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3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함.(안 제24조제6항)

3) 자녀돌봄휴가 부여와 가산일수 적용(안 제24조제18항)

- 자녀돌봄휴가 부여 및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함.

4) 직원 자기계발 휴가 부여(안 제24조제19항)

-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월에 재충전과 자기계발 기회제공을 통

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휴가 1일을 받을 수 있도록 함.

나.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한 연가제도 개선

1) 연가 가산 제도 개선(안 제18조제2항)

-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또는 병가를 사용한 공무원도 그 다음해에 1일의 연가 가산 대상에 포함함.
- 교육훈련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에서 제외함.

2) 연가사용 활성화 등을 위한 연가제도 개선

-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도록 함.(안 제20조제7항)
- 연가보상비의 지급 대상인 연가 일수를 10년의 범위에서 이월·저축이 가능하도록 연가의 저축 제도 도입(안 제20조의4)

다. 연가제도 운영기준 정비

1) 연가사용 권장을 위한 조치 기간 확대(안 제20조의3)

- 권장연가일수 공지기간 확대
-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의 사용시기 통보기한 확대

2) 연가 일수에 토요일·공휴일 산입 제외(안 제25조)

-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토요일·공휴일을 산입하도록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(2020. 7. 30. ~ 8. 4./ 5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결근·휴직·정직·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”을 “결근·정직·강등·직위해제 사실 및 제21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병가”를 “병가(제22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제2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. 이 경우 구청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,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
제20조의2 중 “일수가”를 “일수(제20조의4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)가”로 한다.

제20조의3제1항 중 “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”를 “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”를 “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9월 30일”을 “10월 31일”로 한다.

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4(연가의 저축)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·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이월·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·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.

1.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
2.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
3. 제22조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
4.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
5.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

제21조제1항 본문 중 “연가일수”를 “연가일수(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20조의4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

제23조제5호 중 “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3조”를 “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

하며, 같은 항 제1호(종전의 제2호) 중 “임신기간이 12주 이상”을 “임신기간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8항 및 제1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,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.

⑥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.

⑱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(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)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1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(이하 “어린이집등”이라 한다)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

2.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「민법」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)에 동행하는 경우

⑲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자기계발 휴가 1일을 받을 수 있다.

제24조의2 중 “제21조제3항·제4항”을 “제20조의3 제1항·제2항, 제21조의제3항·제4항”으로 하고, “제22조제1항·제3항”을 “제22조”로 한다.

제25조 단서 중 “휴가일수가”를 “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”로 한다.

별표 5 제1호나목 단서 중 “휴가일수가 15일”을 “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

일”로 하고, 제2호가목 단서 및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이 연도 중 변경된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같은 기간별로 비례하여 계산한 연가시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.

라.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권장 연가 시간은 지방자치단체의 권장 연가 일수에 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$$\begin{array}{l} \text{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} \\ \text{제7조의4제1항에 따른} \\ \text{지방자치단체별 권장연가일수} \end{array} \times \frac{\text{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}}{\text{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}} \times 8$$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4조제19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8조(연가일수) ① (생략)</p> <p>② 해당 연도에 <u>결근·휴직·정직·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.</u></p> <p>1. <u>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제20조(연가계획 및 허가) ① ~ ⑥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18조(연가일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결근·정직·강등·직위해제 사실 및 제21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<u>병가(제22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)</u>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0조(연가계획 및 허가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<u>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저축 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. 이 경우 구청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,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</u></p>

제20조의2(연가 당겨쓰기)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8조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20조의3(연가 사용의 권장)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공지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20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

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
제20조의2(연가 당겨쓰기) -----

----- 일수(제20조의4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)가 -----

제20조의3(연가 사용의 권장) ① -----

----- 10
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 -----

② -----

않을 수 있다.

1.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,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

2.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

<신 설>

-----.

1. ---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-----

2. -----

----- 10
월 31일-----

제20조의4(연가의 저축)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·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이월·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·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.

제21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 ①
 결근일수·정직일수·직위해제
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
 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는 연가
일수에서 공제한다. 다만, 「지
 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1조의6
 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
 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
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
 다. <단서 신설 2019.06.28.>
 ② ~ ④ (생략)
 ⑤ 제2항에서 “사실상 직무에

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
 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
 급하지 않는다. 다만, 다음 각
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.

1.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
 직권면직된 경우
2.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
 로 휴직을 한 경우
3. 제22조제2항에 따른 병가를
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
 경우
4.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
 를 사용한 경우
5.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

제21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 ①

 ----- 연가
 일수(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
제20조의4에 따른 저축연가 일
수를 포함한다)----. -----

 --. -----
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 ⑤ -----

종사하지 않은 기간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 훈련 기간

5.·6. (생략)

제23조(공가)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또는 「결핵 예방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을 받을 때

6. ~ 12. (생략)

제24조(특별휴가) ①·② (생략)

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

5.·6.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공가)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-----

6. ~ 12.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특별휴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, 임신

을 수 있다. 다만,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.

④ (생략)

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.

1.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(이하 “임신기간”이라 한다)이 11주 이내인 경우
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

2.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

3. 4. (생략)

5. (생략)

<신설>

⑥ (생략)

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---.

<삭제>

1. 임신기간이 -----
--

2. 3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

4. (현행 제5호와 같음)

⑥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.

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

⑦ ~ ⑨ (생략)

⑩ ~ ⑯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24조의2(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

⑧ ~ ⑩ (현행과 같음)

⑪ ~ ⑰ (현행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와 같음)

⑱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(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)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1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(이하 “어린이집등”이라 한다)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

2.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「민법」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)에 동행하는 경우

⑲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자기계발 휴가 1일을 받을 수 있다.

제24조의2(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

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)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제18조제1항, 제21조제3항·제4항, 제22조제1항·제3항, 제24조제4항 및 제25조에
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다.

제25조(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)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별표5]

1. 휴가일수 계산 등

가. (생략)

나.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과 공휴일(토요일을 포함한다)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휴가일수가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.

다. (생략)

2. 연가

가.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,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

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) -----

----- 제20조의3
제1항·제2항, 제21조제3항·제4항, 제22조-----

제25조(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) -----

----- 연
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-----

[별표5]

2. 휴가일수 계산 등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과 공휴일(토요일을 포함한다)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.

다. (현행과 같음)

2. 연가

가.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,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

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나. ~ 다. (생략)

<신설>

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이 연도 중 변경된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같은 기간별로 비례하여 계산한 연가 시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.

나. ~ 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권장 연가 시간은 지방자치단체의 권장 연가 일수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$$\begin{array}{l} \text{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} \\ \text{제7조의4제1항에 따른} \\ \text{지방자치단체별} \\ \text{권장연가일수} \end{array} \times \frac{\begin{array}{l} \text{시간선택제공무원} \\ \text{등의 주당} \\ \text{근무시간} \end{array}}{\begin{array}{l} \text{공무원의 주당} \\ \text{근무시간} \end{array}} \times 8$$